

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7일
신청법인	명칭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대표자 (이사·청산인)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	전화번호		
처분재산	종류 및 수량			
	금액			
	처분방법			

처분 사유

「민법」 제80조제2항 및 「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성 평 등 가 족 부 장 관 귀하

첨부서류	1. 해산 당시의 정관 1부(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총회의 회의록(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사본 1부(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➔

접 수

➔

확 인

➔

결 재

➔

결과 통지

신청인

처리기관: 성평등가족부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)